

# 『호주, 테카브로모디페닐에탄(DBDPE)과 수은 및 수은화합물 함유 제품의 수입, 제조, 사용 및 수출 금지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5. 5.

TBT 통보 여부	통보	HS Code	28, 29
통보국	호주	전년도 수출규모 (천불)	172,645
작성기관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문의처	tbt@kotica.or.kr

## [ 목 차 ]

1. 규제 개요 .....	1
2. 제정 세부내용 .....	3
3. 관련 법령 및 표준 .....	12
붙임. 규제 참고자료 .....	13

# 1

## 규제 개요

- (도입배경 및 목적) 호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수자원부에서는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발표함\*

\* 동 제정안 채택 시, 이에 따라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IChEMS 등록부 Schedule 6에 할당되며,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관할지역에서 동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

- (규제요지) 동 제정안에서는 ①적용범위, ②DBDPE 관련 제조, 수입·수출, 사용 금지 ③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련 제조, 수입·수출, 사용 금지, ④기록 보관 및 보고 ⑤관련 폐기물 적정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

TBT 통보번호	AUS/181	통보일	2025년 5월 8일
		고시일	-
규제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위험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표준 제안: 제안된 표준 -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탄(DBDPE), 화학적 프로파일(DBDPE), 제안된 표준 - 수은 및 수은화합물, 화학적 프로파일(수은 및 수은화합물)</li> <li>Proposed management standards for high-risk industrial chemicals: Proposed standard - Decabromodiphenyl ethane (DBDPE), Chemical profile(DBDPE), Proposed standard -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, Chemical profile(Mercury and mercury compounds)</li> </ul>		
규제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수자원부</li> <li>Department of Climate Change, Energy, the Environment and Water(DCCEEW)</li> </ul>		
요구사항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,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 및 제품의 수입, 제조, 사용 및 수출 금지</li> </ul>		
제·개정 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정 초안</li> </ul>		
채택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5년 7월 31일(예정)</li> </ul>		
의견수렴 마감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5년 5월 28일</li> </ul>		
발효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7년 1월 1일(DBDPE)</li> <li>2026년 7월 1일(수은 및 수은화합물)</li> </ul>		
준수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별 상이(본문 [표 3], [표 7] 내용 참고)</li> </ul>		

□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<p>적용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</li> <li>▪ Decabromodiphenyl ethane(DBDPE),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</li> </ul>		
<p>적용범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,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 및 제품</li> </ul>		
<p>對발행국 수출액 (전년기준, 천불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72,645</li> </ul>	<p>HS Code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28, 29</li> </ul>

## 2

## 제정 세부내용

### □ (제정 세부내용)

- (적용범위) 동 제정안은 산업용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, 이를 함유한 혼합물 및 제품에 적용되며 상세 적용범위는 아래 [표 1]과 같음
  - 동 제정안은 산업용 화학물질에만 적용되며, 수의용 또는 의약용과 같은 기타 화학적 용도\*는 동 제정안 적용범위에서 벗어남
- \* 수의용/의약용 등 기타 화학적 용도의 경우 동 제정안이 아닌 별도의 규제 체계에 따라 관리됨
  - 산업용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우수한 물리·화학적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왔으나, 최근 환경 유해성 및 인체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([표 2] 참고)

[표 1] 적용범위

구분	관련 산업용 화학물질	CAS
DBDPE	- DBDPE - 일정 비율의 DBDPE를 함유한 화학 물질	- 84852-53-9 - 1092834-40-6 (:)
수은 및 수은화합물	- 수은 및 수은 합금과 아말감 - 분자식에 수은 원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 (예) 무기화합물(1가 및 2가 이온, 즉 제1수은염 및 제2수은염), 유기 수은화합물(수은이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에 공유 결합된 화합물)	- 7439-97-6 - 7487-94-7 - 1344-48-5 - 22967-92-6 - 115-09-3 (:)

[표 2]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 특성, 응용분야, 환경 유해성 및 인체위험성

구분	DBDPE	수은 및 수은화합물	
		수은	수은화합물
기본 정보	- C <sub>14</sub> H <sub>4</sub> Br <sub>10</sub> (84852-53-9)	- Hg(7439-97-6)	- HgCl <sub>2</sub> (7487-94-7) - HgS(1344-48-5) - CH <sub>3</sub> Hg <sup>+</sup> (22967-92-6) - CH <sub>3</sub> HgCl(115-09-3) 등 다수
	- 열 안정성 우수(난연성) - UV 저항성 우수	- 상온 액체 금속 - 높은 밀도 - 전기전도율 우수 -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팽창률 일정	- 살균/방부 효과 - 안료/염료 특성(버밀리온 안료) - 촉매 특성(예: 염화비닐 모노머 생산 시 반응 속도 증가)
응용분야	- 플라스틱(전기/전자)	- 투광등, 기로등, 고출력	- 배터리(예: 알카라인 버튼)

구분	DBDPE	수은 및 수은화합물	
		수은	수은화합물
	<p>장비(예 컴퓨터 케이스, 텔레비전), 자동차 부품, 건축 자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섬유(커튼, 실내 장식품, 카펫 등)</li> <li>- 전선 및 케이블(절연 재료)</li> <li>- 고무 및 코팅제(산업용 응용 분야)</li> </ul>	<p>실외등 및 일반 조명(예 소형 형광등(CFL), 저온램프, 네온등, 고압 수은 증기 램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제품(스위치, 릴레이, 가전제품, 노트북)</li> <li>- 측정 및 교정 기기와 장치(예 산업용 온도계, 압력계 및 기압계, 자이로컴퍼스)</li> <li>- 연구에 사용되는 전극 및 촉매</li> <li>- 야말감 제조</li> </ul>	<p>배터리, 수은 배터리, 아연-공기 배터리, 신축은 배터리, 망간-간판지 배터리 및 알카라인 간판지 배터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페인트 및 색소 산업에서 사용되는 신축수은 적색 및 주홍색(황화수은) 안료</li> <li>- 화장품(예 피부미백 크림, 눈 메이크업)</li> <li>- 실험실 시약, 화학 중간체, 촉매 및 주파수 표준</li> <li>- 재료 제조를 위한 X선 및 감마선 검출 및 이미징 장치</li> <li>- 수은 생산 또는 기타 수은 화합물 합성</li> </ul>
환경 유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난분해성</li> <li>- 환경 잔류성</li> <li>- 생물농축성</li> <li>- 장거리이동성</li> <li>- 어류, 쥐, 생쥐에 간독성</li> <li>- 쥐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발 가능성 보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난분해성</li> <li>- 환경 잔류성</li> <li>- 생물농축성</li> <li>- 수생생물에 높은 수준의 만성 독성</li> </ul>	
인체 위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기적 노출 시간 · 호르몬 영향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음</li> <li>- 급성 독성 낮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, 흡수된 수은 중의 약 80%가 폐포에서 빠르게 흡수됨</li> <li>- 고농도 증기에 노출될 경우 뇌, 신장,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무기 수은) 주로 호흡기, 피부, 위장관을 통해 흡수되며, 신장에 축적되어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킴</li> <li>- (무기 수은) 고용량 섭취 시, 위장관 부식, 급성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음</li> <li>- (유기수은) 가장 독성이 강한 형태로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인체에 유입됨</li> <li>- (유기수은) 체내에 한번</li> </ul>

구분	DBDPE	수은 및 수은화합물	
		수은	수은화합물
			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며, 치명적 중추신경계 독성, 태아 독성 등이 있음
1) 수은 합금, 아말감, 무기 1가 및 2가 이온, 유기수은화합물 등 수은 원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			

- (DBDPE 관련 제조, 수입·수출, 사용 금지) 동 제정안에 따라 DBDPE, DBDPE를 포함한 혼합물 및 제품은 2022년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(등록부) 원칙(이하 ICEMR\* 원칙)에 의거하여 Schedule 6에 등재되며, 이에 따라 호주에서 제조, 수입·수출, 사용이 금지됨
- 단, 아래 [표 3]에 해당하는 필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한까지 사용이 가능\*\*하며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경우나 그 용도에 따라 제조, 수입·수출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([표 4] 내용 참고)

\*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(Register) Principles 2022

\*\* 난연성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실현가능한 대체물이 없어야 함

[표 3] 필수용도 별 DBDPE 사용가능 기한

필수용도(최종용도)	DBDPE 사용가능 기한
항공우주 분야	2033년 7월 1일까지
자동차 및 운송 분야	2033년 7월 1일까지
국방 분야	2033년 7월 1일 이후 주무부서에서 검토 예정
전기 및 전자 장비	2033년 7월 1일까지
건물 및 건설	2033년 7월 1일까지
상기 분야의 교체 부품	완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일 또는 2048년 7월 1일까지

[표 4] DBDPE 금지사항 적용면제 조건

금지사항 구분	특정 적용면제 조건	관련 조항
제조 금지	- 화학물질이 10 mg/kg 이하의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으로 존재하는 경우 - 연구 또는 실험실용인 경우	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))에 따라 허용
수입 및 수출 금지	- 이 화학물질이 10 mg/kg 이하의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으로 존재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- 이 화학물질이 500 mg/kg 이하의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으로 존재하는 완제품인 경우	

금지사항 구분	특정 적용면제 조건	관련 조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 또는 실험실용인 경우</li> <li>- 유해폐기물 허가에서 이 화학물질 종류의 수입 또는 수출을 승인한 경우</li> <li>- 필수용도의 완제품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)에 따라 허용</li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i)에 따라 허용</li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ii)에 따라 허용</li> </ul>
<p>사용(가공, 취급, 운송 및 보관 포함) 금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화학물질이 10 mg/kg 이하의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으로 존재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</li> <li>- 이 화학물질이 500 mg/kg 이하의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으로 존재하는 완제품인 경우</li> <li>- 연구 또는 실험실용인 경우</li> <li>-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분을 위한 경우</li> <li>- 202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완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- 필수용도의 완제품인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b)(i)에 따라 허용</li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b)(ii)에 따라 허용</li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b)(iii)에 따라 허용</li> </ul>

○ (DBDPE 관련 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준수요건) 동 제정안에 따라 DBDPE, DBDPE를 포함한 혼합물 및 제품을 수입, 수출, 사용, 생산, 관련 폐기물을 보유한 자는 아래 [표 5]의 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

[표 5] 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준수요건(DBDPE)

구분	준수요건
수입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완제품에 함유된 이 화학물질의 중량 기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공급망에 제공해야 함</li> <li>2. 다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, 관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화학물질의 식별, 중량 기준 농도 및 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완제품에 대한 정보</li> <li>- 사용의 정당성</li> <li>- 사용 조건 및 안전한 처분에 관한 세부 정보</li> </ul> </li> <li>3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</li> </ol>
수출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</li> </ol>
사용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, 관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함</li> </ol>

구분	준수요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화학물질의 식별, 중량 기준 농도 및 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완제품에 대한 정보</li> <li>- 사용의 정당성</li> <li>- 사용 조건 및 안전한 처분에 관한 세부 정보</li> </ul> 2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
생산자	1. 이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2. 관련 폐기물 취급 및 처분 기준값 미만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아야 함
폐기물 보유자	1. 이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2. 관련 폐기물 취급 및 처분 기준값 미만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아야 함

○ (DBDPE 관련 폐기물 적정 관리) DBDPE 관련 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[표 6]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

[표 6]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요건(DBDPE)

구분	준수요건
폐기물 처분	1. 500 mg/kg 이상의 농도로 이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함유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은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잔여 폐기물 및 환경 배출이 ICEMR Schedule 6 또는 ICEMR Schedule 7 위험 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도록 이 화학물질을 파괴하거나 비가역적으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,</li> <li>- 위에 따른 처리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경우,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승인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*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함</li> </ul> *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'에는 주 및 준주 규정/정책(예: 폐기물 종료 코드, 청정 충전재 코드 또는 국가적으로 합의된 지침)이 포함될 수 있음 2. 폐기물 처분이 이 화학물질 종류의 회수, 재활용, 재생 또는 재사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
폐기물 관리	1. 500 mg/kg 미만의 농도로 이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함유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승인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*으로 관리하거나 처분 *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'에는 주 및 준주 규정/정책(예: 폐기물 종료 코드, 청정 충전재 코드 또는 국가적으로 합의된 지침)이 포함될 수 있음
관련 재고 관리	1. 이 화학물질 종류와 관련된 활동이 제조, 수입 및 수출,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 재고 보유자는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보호 주무기관에 재고의 성격 및 규모를 통지해야 함</li> <li>- 재고를 폐기물로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함</li> </ul>

구분	준수요건
	- 해당 관할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

- (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련 제조, 수입·수출, 사용 금지) 등 제정안에 따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, 이를 포함한 혼합물 및 제품은 ICEMR에 의거하여 Schedule 6에 등재되며, 이에 따라 호주에서 제조, 수입·수출, 사용이 금지됨
- 단, 아래 [표 7]에 해당하는 필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경우나 그 용도에 따라 제조, 수입·수출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([표 8] 내용 참고)

[표 7] 필수용도 별 수은 및 수은화합물 사용가능 기한

필수용도(최종용도)		수은 및 수은화합물 사용가능 기한
시민 보호 및 군용 필수 제품		별도 지정된 기한 없음
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	스위치 및 릴레이	별도 지정된 기한 없음
	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 전극 형광램프(CCFL 및 EEFL)	별도 지정된 기한 없음
	측정장치	별도 지정된 기한 없음
	일반 조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가시광선 방출 램프	별도 지정된 기한 없음
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 - 수은함유램프	일반 조명용 선형 형광램프(LFL)	수은 함량이 램프당 5 mg을 초과하지 않는 60 W 미만의 삼파장 형광체 2027년 12월 31일까지
		60 W 이상의 삼파장 형광체 2027년 12월 31일까지
	일반 조명용 삼파장 형광체 비선형 형광램프(NFL)(예: U자형 및 원형, W 무관)	2027년 12월 31일까지
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 - 일반 조명용 고압 나트륨 증기 및 메탈 할라이드 램프		2030년 6월 1일까지

[표 8] 수은 및 수은화합물 금지사항 적용면제 조건

금지사항 구분	특정 적용면제 조건	관련 조항
제조 금지	- 화학물질이 의도치 않게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량오염으로 존재하는 경우 - 연구 또는 실험실용인 경우 - 필수용으로 제조되는 경우	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ii)에 따라 허용
수입 및 수출 금지	- 화학물질이 의도치 않게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량오염으로 존재하는 경우 - 연구 또는 실험실용인 경우	

금지사항 구분	특정 적용면제 조건	관련 조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해폐기물 허가에서 이 화학물질 종류의 수입 또는 수출을 승인한 경우</li> <li>- 필수용도로 수입 및 수출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ii)에 따라 허용</li> </ul>
사용(가공, 취급, 운송 및 보관 포함)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학물질이 의도치 않게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량오염으로 존재하는 경우</li> <li>- 연구 또는 실험실용인 경우</li> <li>-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분을 위한 경우</li> <li>- 필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</li> <li>-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완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)에 따라 허용</li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b)(iii)에 따라 허용</li> <li>- ICEMR 원칙(하위섹션 15(2)(a)(iii)에 따라 허용</li> </ul>

- (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련 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준수요건) 동 제정안에 따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,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포함한 혼합물 및 제품을 수입, 수출, 사용, 생산, 관련 폐기물을 보유한 자는 아래 [표 9]의 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

[표 9] 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준수요건(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련)

구분	준수요건
수입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2. 완제품에 함유된 이 화학물질의 중량 기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공급망에 제공해야 함</li> <li>3. 다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, 관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화학물질의 식별, 중량 기준 농도 및 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완제품에 대한 정보</li> <li>- 호주 시장에서 사용되거나 출시된 이 화학물질 종류의 양</li> <li>- 사용의 정당성</li> <li>- 사용 조건 및 안전한 처분에 관한 세부 정보</li> </ul> </li> </ol>
제조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2. 완제품에 함유된 이 화학물질의 중량 기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공급망에 제공해야 함</li> <li>3. 다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, 관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화학물질의 식별, 중량 기준 농도 및 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완제품에</li> </ul> </li> </ol>

구분	준수요건
	<p>대한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주 시장에서 사용되거나 출시된 이 화학물질 종류의 양</li> <li>- 사용의 정당성</li> <li>- 사용 조건 및 안전한 처분에 관한 세부 정보</li> </ul>
수출업자	1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을 준수해야 함
사용자	<p>1. 다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, 관할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화학물질의 식별, 중량 기준 농도 및 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완제품에 대한 정보</li> <li>- 호주 시장에서 사용되거나 출시된 이 화학물질 종류의 양</li> <li>- 사용의 정당성</li> <li>- 사용 조건 및 안전한 처분에 관한 세부 정보</li> </ul> <p>2. 산업용 화학물질 통제를 위해 관련 연방법 또는 주법을 준수해야 함</p>
생산자	<p>1. 이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</p> <p>2. 관련 폐기물 취급 및 처분 기준값 미만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아야 함</p>
폐기물 보유자	<p>1. 이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폐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</p> <p>2. 관련 폐기물 취급 및 처분 기준값 미만으로 농도를 낮추기 위해 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아야 함</p>

○ (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련 폐기물 적정 관리)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[표 10]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

[표 10]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요건(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련)

구분	준수요건
폐기물 처분	<p>1. 총 수은 농도 15 mg/kg 이상으로 이 화학물질 종류로 구성되거나 함유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바젤협약에 따라 개발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,</li> <li>- 위 처리방법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경우,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승인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*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함</li> </ul> <p>*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'에는 주 및 준주 규정/정책(예: 폐기물 종료 코드, 청정 충전재 코드 또는 국가적으로 합의된 지침)이 포함될 수 있음</p> <p>2. 필수적인 최종 용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화학물질 종류의 회수, 재활용, 재생 또는 재사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</p>

구분	준수요건
폐기물 관리	1. 총 수은 농도 15 mg/kg 미만으로 이 화학물질 종류로 구성되거나 함유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승인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*으로 관리해야 함 *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'에는 주 및 준주 규정/정책(예: 폐기물 종료 코드, 청정 충전재 코드 또는 국가적으로 합의된 지침)이 포함될 수 있음
관련 정보 보고	1. 처분된 폐기물은 다음 정보를 관련 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해야 함: - 이 화학물질 종류를 함유한 폐기물의 식별정보 및 양 - 이 폐기물의 출처 및 중량 기준 농도 - 이 폐기물을 수용하는 시설의 이름 및 연락처 - 처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
관련 재고 관리	2. 이 화학물질 종류와 관련된 활동이 제조, 수입 및 수출,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 재고 보유자는: - 환경보호 주무기관에 재고의 성격 및 규모를 통지해야 함 - 재고를 폐기물로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함 - 해당 관할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

- (발효일) 동 제정안은 DBDPE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금지 및 제한·위험 관리 조치 항목에 대해 각각 2027년 1월 1일,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단, 필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관련 업계 및 피규제자에게 대응시간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가능 기한을 규정하고,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 물질로 존재하는 경우나 그 용도에 따라 제조, 수입·수출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함

[표 11] 동 제정안

<p><b>데카브로모디페닐 에탄(DBDPE) - 표준안</b>  <b>[통합용] 2022년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 (등록부) 법률 문서</b>  (:)</p>
<p>금지 및 제한을 비롯한 위험 관리 조치  (a) 이 항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.  (:)</p>
<p><b>수은 및 수은화합물 - 표준안</b>  <b>[통합용] 2022년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 (등록부) 법률 문서</b>  (:)</p>
<p>금지 및 제한을 비롯한 위험 관리 조치  (a) 이 항목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.  (:)</p>

(관련 법령)

- 2021년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(등록부)법<sup>1)</sup>
- 2022년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(등록부) 법률 문서<sup>2)</sup>
- 2022년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(등록부) 원칙<sup>3)</sup>

---

1) <https://www.legislation.gov.au/C2021A00027/latest/text>

2) <https://www.legislation.gov.au/F2022L01658/latest/text>

3) <https://www.legislation.gov.au/Details/F2022L01436>

(규제원문 출처)

- ePing SPS&TBT Platform
- 원문링크: [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\\_03211\\_00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_03211_00_e.pdf), [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\\_03211\\_01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_03211_01_e.pdf), [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\\_03211\\_02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_03211_02_e.pdf), [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\\_03211\\_03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nattachments/2025/TBT/AUS/25_03211_03_e.pdf)